

의안번호	2212143
의 퇴 인	김태선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2.
추 계 번호	25B4729

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기본이념과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해양수도 조성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,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(이하 “이전기관등”이라 함)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·주거·교육·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함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이전기관등의 이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5조(이전계획의 수립)	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1.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.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.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	의무규정
3	안 제6조(이전지원계획의 수립)	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등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)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기관등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전기관등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7조(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이전기관등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(제1항)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(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「주택법」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)는 이전기관등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,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「주택도시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음(제2항)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음(제3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기업에게 행정적·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5	안 제8조(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·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양수도 조성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9조(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1.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.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 3. 이주직원에 대한 자녀 학업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4. 이주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5. 이주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·등록세 환급에 관한 사항 6. 이전기관의 이전에 따른 교통·복지·문화·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7.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기관등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「주택법」 제54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. 다만, 우선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주직원에 대해서는 「주택법」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7	안 제11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의 이전과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의 이전과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·「농지법」·「초지법」·「산지관리법」·「자연환경보전법」·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·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·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·농지보전부담금·대체초지조성비·대체 산림자원조성비·생태계보전부담금·교통유발부담금·광역교통시설 부담금·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8	안 제12조(예산 지원 등)	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전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국가는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이전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

Ⅲ. 미첨부 사유

□ 제정안은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이 전기업¹⁾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·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 는 것임

- 제정안은 이전기관등²⁾에 대한 지원,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, 이주직원
에 대한 지원,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,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
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추가재정소요가
발생할 수 있음

□ 이전계획 및 이전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5조 및 제6조)

- 제정안은 이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, 이
전시기에 관한 사항,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이
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이전기관등이 이전하
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기관등의 의견, 이전기
관등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
도록 하고 있음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가.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

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관

2. “이전기관”이란 제1호의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
한다.

3. “해양수산업”이란 「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의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.

4. “이전기업”이란 제3호의 해양수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
말한다. 다만, 부산광역시·울산광역시·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제외한다.

2)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

- 해양수산부에 따르면, 이전계획 및 이전지원계획은 해당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예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□ 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(안 제7조)

-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기관등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·융자하거나, 공공택지 우선공급, 기금 융자,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·기업의 수, 지원유형별 지원 방법·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이전 대상 기관·기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(안 제8조)

- 제정안은 부산 해양수도 조성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등에 대한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
-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 국·공유재산과 감면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나, 제정안은 국·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임대료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(안 제9조)

-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기관등의 직원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,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,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,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·등록세 환급, 이전기관의 이전에 따른 교통·복지·문화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이전기관등의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

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·기업, 해당 기관·기업별 지급 대상 이주직원 수, 지급 기준·단가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이전 대상 기관·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- 참고로,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 중 부산 이전 직원(약 600명)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직원 전월세 지원(32억원), 이주·이사지원(44억원), 교통지원(통근버스·KTX 등, 36억원) 등 약 113억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

[표 1] 해양수산부 직원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 편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	사업개요	2026예산안
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(7041-303)		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및 안정적 정주·근무 여건 조성	
직원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	전월세	전세이자 및 월세비용 지원	3,230
	이주지원	이주지원비 지급	1,723
	이사비	이사 비용 지급	2,717
	버스	통근버스 임차료, 고속철도 요금 할인 등 교통지원	2,432
	고속철도		441
	공용차량		364
	업무택시		400
	합 계		11,307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- 그리고 이주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구입에 따른 취·등록세 환급의 경우 현 시점에서 이전 대상 기관·기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며, 이주직원의 주택 구입 수요, 취·등록세 환급 비율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또는 세수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또한, 이전기관의 이전에 따른 교통·복지·문화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에 소요될 비용은 현 시점에서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(안 제11조)

- 제정안은 이전기관등의 이전과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, 개발부담금·농지보전부담금·대체초지 조성비·대체산림자원조성비·생태계보전부담금·교통유발부담금·광역교통시설 부담금·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부담금 수입 등이 감소할 수 있음
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이전기관별 감면 대상 국세·지방세·부담금의 종류, 감면 비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제정안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수입 등의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

□ 예산 지원 등(안 제12조)

- 제정안은 국가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전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,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이전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na.go.kr